

사단법인 청소년 길 기부금품 관리 및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청소년 길(이하 “법인”이라 한다) 정관 제4조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절차를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적용범위)

기부금품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기부자”라 함은 법인에 무상으로 반대급부 없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기부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기부금”이라 함은 정관 제4조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법인이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물품, 부동산,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3. “일반기부금”이라 함은 기부자가 조건 없이 법인에 증여한 기부금을 말한다.
4. “지정기부금”이라 함은 기부자가 기부대상이나 지원방법, 기부방식 등을 지정한 기부금을 말한다.
5. “지정기부금 수혜자”라 함은 지정기부금에서 지정한 기부금 수혜 단체, 개인 또는 단체의 개별 단위 사업을 말한다. 법인 단위사업에 대한 지정 기부의 경우 지정기부금 수혜자는 해당 사업의 주관부서가 된다.

제4조(기부금 모금의 원칙)

- ① 법인은 기부금을 모금함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 도덕성의 원칙에 따라 모금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은 기부자나 잠재기부자의 기부 의사를 존중하고, 또한 이들의 요구를 업무 여건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하여야 한다.
- ③ 법인은 기부금을 모금할 경우, 기부자 및 잠재기부자들에게 명확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 기부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제5조(기부신청)

법인에 기부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부약정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부 금품을 표기한다.
2. 기부 목적을 표기한다.

3. 기부 조건이 있을 경우 표기한다.
4. 기부자 주소, 주민등록번호(고유번호 등), 기부자(법인/개인)성명
5. 현물 기부 또는 부동산, 기타자산일 경우 기부물품의 명세 및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6조(기부신청의 예외) 인터넷, 전화, 지로 및 대중매체 홍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기부건에 대해서는 당해 기부금 모금사업의 모금방식에 따른 별도 양식과 기부신청 절차로 기부 신청 및 기부 약정서를 대신할 수 있다.

제7조(기부금의 용도 및 사용원칙)

- ① 기부금은 정관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의 범위 내에서 운용 및 사용되어야 하며 사용 담당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기부금품 사용명세 보고서를 이사장 또는 배분위원회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기부금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집비용을 제외하고는 공익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 ③ 기부금은 출연용도 및 출연 금액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④ 다음 각호와 같은 성격의 기부금은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인 설립목적 및 운영 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성격의 기부금
 2. 법인의 명예와 신뢰에 반할 수 있는 성격의 기부금
 3. 불법적인 행위나 과정을 통해 조성된 기부금
 4. 사용가치를 고려할 때 측정이 어렵거나 부적합한 성격의 물품
 5. 법인의 규정이나 기타 관계 법령 등에 위반의 소지가 있는 기부금

제8조(기부자 의사존중 및 기부금 공고)

- ① 기부금 모집을 통해 수집된 기부자 관련 정보는 본래의 목적이나 기부자의 의사에 반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② 기부금 수혜자에 관한 관련 정보는 수혜자의 의사에 반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③ 기부금은 공익법인 지정의무이행 및 사후관리 의무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법인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연간보고서 배포 등의 방법으로도 공개할 수 있다.

제9조(배분위원회 설치운영 및 구성)

- ① 법인은 기부금 채납 여부와 채납된 기부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배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사회 운영방법에 준하여 운영한다.
- ③ 위원회는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무처장과 상임이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사무처장이 추천하고 이사장이 위촉한다.
 1. 이사 또는 정관 제19조에 따른 비등기이사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이나 이에 준하는 전문가

3. 청소년 분야 전문가, 학계, 언론계, 경제·경영, 공공부문 관련 전문가
- ④ 외부 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의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은 제외한다. 결원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임에 따른다.
- ⑥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 시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 중 사망이나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기타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위원의 전보나 거처의 이동으로 임무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배분위원회 기능과 임무)

-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기부금 채납 여부 사항
 2. 기부금 사용에 대한 사항
 3. 기타 기부금 모집·관리·운영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각호의 경우 기부채납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인 목적사업을 위해 동일한 기부내용 및 조건으로 지속하는 정기 및 정률 기부
 2. 법인 목적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5백만원 이하의 기부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기부금 접수 및 관리)

- ① 기부금 접수, 관리 및 운영, 사용은 사무처에서 담당한다. 다만,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관리 및 심의, 운영을 배분위원회에서 담당한다.
- ② 사무처 또는 배분위원회는 기부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부금 채납 여부와 기타 필요 제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고, 법인은 심의 결과를 즉각 기부자에게 통지하고, 지정기부금인 경우 기부금 수혜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법규 및 제7조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기부금 채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법인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기부금 출납부 또는 기부물품 출납부를 작성해 접수금액 또는 접수물품과 지출내용 또는 출급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제12조(기부금 처리)

- ① 기부금을 채납하였을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기부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사업연도별로 작성해 보관하여야 한다.
- ② 법인에 채납된 기부금 중 일반기부금은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미사용 잔액(관리 기간 중 이자를 포함)이 발생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통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한다.
- ③ 법인에 채납된 기부금 중 지정기부금은 법인 별도 계정으로 기부자와의 조건 내용에 따라 관리 운영하고 사업종료 후 집행 잔액(관리 기간 중 이자를 포함)이 발생하거나 부득이 해당 사업이 진행될

수 없을 경우 기부자의 동의에 따라 일반기부금으로 이월 사용한다. 단, 기부자가 기부시 잔액 처리 방법을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한 바에 따른다.

④ 지정기부금 수혜자는 법인에 일정 방법을 통하여 기부금을 수령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수혜하고, 사업계획에 따른 결과보고 및 회계정산 서류를 법인 또는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성실하게 제출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의2(지정기부금 조정지원)

① 이사장은 지정기부금의 기부 조건에 따라 기부금을 지원함에 있어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그 금액과 지급방법, 또는 사업 내용을 기부 채납 이전 또는 기부금의 지원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기부금 조정 집행을 위하여 기부자로부터 기부금액 또는 사업내용 조정에 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3조(기부자의 권리)

① 기부금이 기부목적과 운영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된 회계정보를 요청할 권리가 있고, 이에 법인은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한다.

② 법인은 선의의 목적으로 기부사례를 외부에 알릴 수 있으나, 기부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

③ 법인은 기부자의 개인정보를 기부금 영수증 발급, 세액공제 혜택 제공 등을 위해 타 기관(국세청 등)에 양도할 수 있고, 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기타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

④ 기부자는 법인의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에 따라 특별회원(기부회원)에 가입되며, 부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보고) 사업연도 내 발생한 모든 기부금 관리 및 운영 내역은 법인 결산보고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위임규정) 이 규정과 관련하여 기부금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침으로 정한다.

부칙 (2024.01.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법인의 주무관청의 공익법인 지정을 받은 때부터 시행한다.